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, 인사혁신처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면서 인재채용국으로 채용 관련 전산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기능을 조정하고 한시조직으로 배정되었던 정원 1명(4급 1명)을 인사혁신처 정원으로 재배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9. 4. ~ 9. 9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3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3. 공무원 채용 관련 전산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

제26조제3항 후단 중 “30명”을 “31명”으로 한다.

제29조의2 앞의 “제7장 한시조직”을 삭제한다.

제29조의2를 삭제한다.

별표 1 중 총계 “418”을 “419”로, 일반직 계 “417”을 “418”로, 3급 또는 4급 이하 “391”을 “392”로 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표 3의2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1조, 제26조, 제29조의2, 별표 1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

인사혁신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(제29조제1항 관련)

조직	정원
1) 재해보상정책관 1개 담당관	3명
2) 인사관리국 1개 과	3명
3) 윤리복무국 1개 과	6명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인재채용국) ①·② (생략)	제11조(인재채용국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③ ----- --.
1. ~ 12. (생략)	1. ~ 12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13. 공무원 채용 관련 전산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</u>
제26조(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·② (생략)	제26조(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인사혁신처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(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)은 <u>30명</u> 을,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(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)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,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(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)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.	③ ----- ----- --. ----- ----- ----- <u>31명</u> 을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④ (생략)	④ (현행과 같음)
<u>제7장 한시조직</u>	<u><삭 제></u>

제29조의2(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

<삭 제>

당관) ① 인사혁신처 기획조정
관 밑에 「행정기관의 조직과
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17조의3
제1항제1호에 따라 2026년 12월
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
로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
1명을 둔다.

②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
은 4급으로 보한다.

③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
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
정관을 보좌한다.

1. 디지털인사관리기본계획의
수립·추진

2.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개발
· 보급·운영·관리

3. 전자인사관리시스템과 유관
시스템의 연계에 관한 사항

4. 공무원 임용·직종·직급·
직렬 등 인사 관련 행정표준
코드에 관한 사항

5. 공무원 채용 절차의 통합 관
리를 위한 시스템(이하 이 항
에서 “채용시스템”이라 한다)
의 구축

6. 시험실시기관의 채용시스템

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

④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
밑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
표 3의2와 같다.

⑤ 별표 3의2의 직급별 정원은
총리령으로 정한다.

신·구 정원대비표

■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[별표 1]

인사혁신처 공무원 정원표(제26조제1항 관련)

직	급	별	현	행	개정안	증	감
총계	.		.		.		
			<u>420</u>		<u>421</u>	+1	
	.		.		.		
	.		.		.		
일반직 계			<u>419</u>		<u>420</u>	+1	
	.		.		.		
3급 또는 4급 이하			<u>393</u>		<u>394</u>	+1	
	.		.		.		
	.		.		.		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연 락 처	(044) 205 - 2309